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6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차량 상속 후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연장 ...	4
2. 폐기 담배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7
3.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사유 보완	10
4.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14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18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등 ...	42
7. 가상자산 과세 유예	47
8.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	51
9.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	5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4. 11. 7.
3. 회부연월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차량 상속 후 말소등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연장

개정안은 차량 상속 후 차령 초과²⁾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말소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략) ¹⁾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u>상속개시일부터 3개월</u>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이는 상속 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³⁾ 보다 차량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량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상속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말소등록 기한(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여 후자의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두 기한을 통일하여 국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등록령」⁴⁾도 2024년 6월 18일 개정을 통해 상속 차량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연장하였다는 점,

③ 말소등록 기한을 연장하여도 상속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상속인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⁵⁾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5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 담배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담배를 폐기하면서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으려는 경우 이를 제조장 또는 수입담배보관장소로 다시 반입한 후 폐기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던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바로 폐기장소로 이동시켜도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 ----- ----- ----- -----.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u>반입된 경우</u>	2. ----- ----- ----- ----- ----- <u>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u>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담배소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면서⁶⁾ 해당 신고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부과⁷⁾하고 있음. 이에 불량·미판매 등에 따른 폐기 담배의 담배소비세를 차년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를 다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으로 반입한 후 세액을 공제·환급 받고 폐기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담배를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6)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폐기하려면 폐기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폐기 담배를 굳이 다시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폐기 여부의 확인·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② 폐기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반입하였다 폐기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3.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사유 보완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공제를 받는데, 개정안은 ① 해당 공제기간(1년)에서 종업원수가 50명에 미달하는 달은 제외하도록 하고, ② 해당 공제요건의 자구상 문제로 최근 1년 내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text{공제액} = (\text{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text{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times \text{월 적용급여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u>1년 동안</u>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u> ----- -----.

현행	개정안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u>1년 전</u>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 <u>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요건을 갖춘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분)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분·종업원분)에 부과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세이며, 이 중 종업원분은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 총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0.5%”로 하는 세목임.

현행법 제84조의5제2항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i)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며 종업원을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 및 ii) 최근 1년간 50명 이하였던 중소기업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한 후 최초 신고월부터 1년간 종업원 50명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① 현행법은 종업원수가 50명을 한 번만 초과하면 종업원수가 다시 감소하여도 1년간 50명분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개정안은 1년 중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공제가 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② 최근 1년 내에 종업원을 50명 이하로 고용하며 신설되었으나 사후적으로 50명을 초과하게 된 중소기업은 상기 i) 또는 ii)의 요건에 모두 포섭되지 않아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사업소가 신설된 중소기업으로서 종업원수가 계속 50명 이하였다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상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8) i)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종업원을 50명 초과 고용한 것도 아니고, ii) 신설된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ii) 최근 1년간 50명 이하였던 중소기업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될 수 없음.

이는 각각 단순한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를 쉽게 하거나(①의 경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②의 경우), 필요한 조치로 보임.

4.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개정안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미이행에 대한 각종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⁹⁾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 제6항¹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2024년 12월 31일까지</u>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¹¹⁾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분)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분·종업원분)에 부과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세이며, 이 중 사업소분은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이 다음 표와 같이 규정된 세목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분	자본금액·출자금액	표준세율
사업소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사업소 연면적	-	-	제곱미터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당시 다음 표와 같이 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현행 사업소분 중 사업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분)과 ② 재산분(현행 사업소분 중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분)이 통합된 것인데,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개요]

종전		현행	
세목 (납세방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세목 (납세방법)
균등분 (보통징수)	개인	개인	개인분 (부과징수(보통징수))
	개인사업자	사업자	사업소분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재산분 (신고납부)	사업자		
종업원분 (신고납부)	사업자	사업자	종업원분 (신고납부)

1973년 도입 이후 부과·징수 방식으로 납부되던 전자(①)가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에 포함되면서, 기존 납세의무자(개인·법인사업자)가 선의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는 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2022년말 까지 2년간 면제하는 특례를 두었고, 이후 이를 2024년말까지 2년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다시 2년간 연장(총 6년간 규정)하려는 것임.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②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독립세로 전환한 후 가산세 면제 특례를 6년간¹²⁾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가산세 면제 특례의 기한만 계속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12) 2020년 시행을 앞두고 2019~2020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한 후, 2년씩 2회 연장하여 현행법상 2024년도 과세기간까지 면제 예정임.

「지방세법」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로 회귀하는 것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계로 회귀하려는 것임(안 제8장제2절의2 삭제 등).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87조의 6¹³⁾, 제87조의7¹⁴⁾,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u>2의2. 금융투자소득</u>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 ----- ----- -----제94조----- ----- ----- ----- -----. 1. 종합소득 ----- -----제2호----- ----- ----- 가.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납세지 등)¹⁵⁾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¹⁶⁾,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납세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현 행	개 정 안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나. (생략)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u>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u>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u>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u>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17)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 가.·나. (현행과 같음) <u><삭 제></u>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data-bbox="255 302 582 638"> <tr> <td>과세 표준</td><td>세율</td></tr> <tr> <td>3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20</td></tr> <tr> <td>3억원 초과</td><td>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abl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¹⁸⁾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삭 제> <삭 제>
과세 표준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현 행	개 정 안
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¹⁹⁾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²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²¹⁾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²²⁾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²³⁾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삭 제>

현행	개정안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u>수시부과세액</u>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제102조의8(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²⁴⁾을 준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u>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u>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 ④ (생략)²⁵⁾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과세표준) ① ----- ----- ----<u>종합소득 및 퇴직소득</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 ----- -----. 1.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u>제103조의9제2항</u>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3(세율)²⁶⁾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1. (생략) <u><신 설></u> <u><신 설></u>	3. ----- <u>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u>----- ----- ----- -----.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3(세율) ①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u>다목²⁷⁾에 따른 자산</u> 가. <u>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u> 나. <u>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u>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²⁸⁾에 따른 <u>과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u>

현 행	개 정 안
14. (생 략) ② ~ ⑥ (생 략) <u><신 설></u> ⑧ ~ ⑩ (생 략)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u><신 설></u>	<u>준의 1천분의 20</u>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 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 할 수 있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 가산세) 「소 득세법」 제115조²⁹⁾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 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 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 과 같음)

현행	개정안
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u>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② ----- ----- ----- ----- ----- --.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u>특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u> ③ <u>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1항 각 호³⁰⁾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u>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5항³¹⁾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	<삭 제> <삭 제> ③ · 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 ----- ----- ----- ----- -----. 1. ----- ----- ----- ----- -----. 가. ----- ----- ----- -----

현행	개정안
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³²⁾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³³⁾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³⁴⁾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매매차익----- ----- ----- ----- ----- ----- ----- 나. ----- 제74조----- -----매매차익예정신고----- ----- ----- ----- ----- -----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 ④ (생략)³⁵⁾	5. ----- ----- ----- ---. ----- -----제74조-----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소득세법」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

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16)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 「소득세법」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19) 「소득세법」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20) 「지방세법」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4) 「지방세법」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6)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 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 <2020. 8. 12.>

5. 삭제 <2014. 3. 24.>

6. 삭제 <2014. 3. 24.>

7. 삭제 <2014. 3. 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 생략)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표 생략)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표 생략)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 12. 30.>

12. 삭제 <2023. 3. 14.>

13. 삭제 <2023. 3. 14.>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표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7.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017. 12. 30.>

2. 삭제 <2017. 12. 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삭제 <2023. 3. 14.>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30., 2020. 8. 12.>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7) 「의안번호 220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8) 「의안번호 220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29) 「의안번호 220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30) 「소득세법」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 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31) 「소득세법」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3)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4) 「소득세법」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35)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국세)로서,

① 주식·채권·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25%의 세율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되, ②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며, ③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계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짐.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방법	• 분류과세(종합과세와 별도의 과세체계)
과세대상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포괄적 과세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의 손익 및 손실 간 상계 허용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그 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신고·납부	•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 납세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10., p.38.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상황인데, 2024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현재 까지도 그 시행을 둘러싼 찬반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목적을 언급하며 ① 현행 조세체계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소득 실현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손실 상계 및 이월을 통하여 실질적인 순수익만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³⁶⁾상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³⁷⁾

반면 정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과세대상자가 15만명까지 확대(세부담 +1.5조원 증가)되고 그 밖에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해외시장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³⁸⁾

한편, 개정안의 대상인 지방소득세는 2010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로 신설된 후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서울도 소득세·법인세와 각각 동일한 소득구간을 설정한 후 소득구간별로 소득세·법인세 서울의 1/10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 등 세부 사항도 가급적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음.³⁹⁾

36)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원칙

3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10., pp.42-43.

38) 기획재정부(세제실), 「2024년 소득세법 개정요강」, 2024.8.

39)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 통일의 사례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 및 ②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률안 심사경과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22대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제안자	주요내용	소관상임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89	박대출의원 등 108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재위
	2203518	정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5	박대출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행안위
	2205362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4	정부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등

개정안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소규모법인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인상(9%→19%)하는 것에 연동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인상(0.9%→1.9%)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9</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4)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9</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td></tr> </table>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40)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⁴¹⁾상 성실신고확인제는 소규모 법인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같은 법상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등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41)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현행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업종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4단계 누진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⁴²⁾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9% → 19%로 조정하는 「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국회에 제출 하였음.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9%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19%로 개정	19%	21%	24%

이에 개정안은 「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연동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1.9%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⁴³⁾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0.9%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1.9%로 개정	1.9%	2.1%	2.4%

42) 소득세(6~45%) 대비 법인세(9~24%)의 고액 구간 세율이 낮은 점을 활용하여,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43) 지방소득세는 2010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로 신설된 후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도 소득세·법인세와 각각 동일한 소득구간을 설정한 후 소득구간별로 소득세·법인세 세율의 1/10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 등 세부 사항도 가급적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안번호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보며,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2년간 연기하는 것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2년간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 ⁴⁴⁾ 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부터</u> , 제10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u>2027년 1월 1일</u> ----- ----- -----.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87조제1항, <u>제89조제3항제4호</u> , <u>제93조제18항</u> ,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	3. ----- <u>제89조제3항제4호</u> ----- -----

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 규정: 2025년 1월 1일 <신 설>	----- ----- ----- ----- ----- ----- 4. 제93조제18항⁴⁵⁾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함⁴⁶⁾.

44)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은 이러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할 예정이며,

그에 연동하여 「지방세법」은 가상자산소득에 지방소득세(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를 과세할 예정임.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둔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등을 이유로 과세 개시일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및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이유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선행하고자 과세 개시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재차 연기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려는 「의안번호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에 연동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도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동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②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가간 정보 교환도 2027년 개시될 예정이므로, 관련 제도가 정립된 후 과세를 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가 연기되면 총 3차례에 걸쳐 5년이 연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 행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②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 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찬반입장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안번호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보며, 개정안의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

개정안은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시 과세기준일을 현행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에서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u>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u> 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 ----- ----- <u>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u> ----- ----- -----.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	③ (현행과 같음)

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⁴⁷⁾상 자동차세 소유분의 징수방법은 ① 6월 1일(제1기분) 및 12월 1일(제2기분)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각각 같은 달에 부과·징수하는 정기납부와 ②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시부과⁴⁸⁾로 구분됨.

47)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48)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 중 자동차 신규등록·말소등록에 따른 수시부과의 과세기준일은
현행법상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① 현행법 제128조제2항제1호상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의 요건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그 과세기준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이 아닌 “취득”, “사용
폐지” 등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② 특히 “취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⁴⁹⁾상 (신규)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어 취득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응익주의
원칙⁵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에 대한 과세는 납세의무 성립(신규등록·
말소등록 등)⁵¹⁾ → 부과 → 징수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행위이기

49)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0) 정부 공공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5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6. 주민세

때문에, 적용 기준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⁵²⁾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52) 또는 동 개정안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의2).

현행	개정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의2(적용시한) ----- -----2026년 12월 31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⁵³⁾ 다음 표와 같이 각종 지방세 세목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형태의 특별시·광역시·도세임.

53)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분	“표준세율-2%p”로 산출한 취득세액(舊등록세분) × 20%
등록면허세분	등록면허세액 × 20%
레저세분	레저세액 ×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 × 43.99%
주민세분	주민세액 × 2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
재산세분	재산세액 ×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 × 30%

주) 레저세분을 제외한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50% 가감 조정 가능(탄력세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1996년 지방세분 교육세로 신설되어 2000년말까지 담배소비세액의 40%로 부과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2001년 지방세분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세율이 50%로 인상되면서 일몰기한이 2003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05년말까지 2년, 2010년말까지 5년, 2015년말까지 5년 연장되었음. 또한 2016년에는 세율이 43.99%로 인하되며 일몰기한이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일몰기한이 2021년말까지 3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연혁]

구분	시행일	과세표준 및 세율	일몰기한
교육세 (지방세분)	1996.1.1.	담배소비세액 × 40%	5년(∼2000년말)
지방교육세	2001.1.1.	담배소비세액 × 50% ※ 지방재정 보강 등을 위한 인상	3년(∼2003년말)
	2004.1.1.		2년(∼2005년말)
	2006.1.1.		5년(∼2010년말)
	2011.1.1.		5년(∼2015년말)
	2015.1.1.	담배소비세액 × 43.99% ※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인하	
	2016.1.1.		3년(∼2018년말)
	2019.1.1.		3년(∼2021년말)
	2022.1.1.		3년(∼2024년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상기 일몰기한을 다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당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시·도 교육청과 시·도 등 간에 다음과 같은 찬반 입장이 대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시·도교육청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⁵⁴⁾에서 ① 최근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예산 대비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②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국가, 시·도 및 시·군·구의 비용 분담 규정⁵⁵⁾이 2024년말 기준 일몰되어 매년 약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⁵⁶⁾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 후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7년 이후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54) 지방교육세는 시·도에서 징수한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액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되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56) 다만, 동 일몰기한을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11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그 심사 경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2024~2033년 초·중·고 학령인구 전망]

(단위: 천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초등학교 (6~11세)	2,485	2,344	2,203	2,036	1,866	1,725	1,607	1,504	1,428	1,383
중학교 (12~14세)	1,384	1,403	1,357	1,328	1,296	1,248	1,154	1,046	955	881
고등학교 (15~17세)	1,379	1,367	1,362	1,382	1,400	1,355	1,326	1,294	1,246	1,153
합계	5,248	5,114	4,922	4,746	4,562	4,328	4,087	3,844	3,629	3,417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반면, 시·도 등은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⁵⁷⁾에서 ① 학령인구 감소는 2027년이 아니라 이미 2000년대 후반 본격화되어 2024년 학령인구(524.8만명)가 2005년 792.3만명 대비 33.8%,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이 신설된 1996년 862.4만명 대비 39.1% 각각 감소되어 있고,

[1996~2024년 초·중·고 학령인구 추이]

(단위: 천명)

구분	1996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학교 (6~11세)	3,822	4,073	4,018	3,280	2,720	2,724	2,720	2,701	2,607	2,485
중학교 (12~14세)	2,343	1,869	2,064	1,985	1,578	1,364	1,380	1,368	1,364	1,384
고등학교 (15~17세)	2,459	2,166	1,841	2,084	1,868	1,390	1,344	1,323	1,364	1,379
합계	8,624	8,108	7,923	7,349	6,166	5,478	5,444	5,392	5,335	5,248

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4」

② 1996년 이후 29년간 이미 일몰기한이 7차례 연장되며 관성화되어 일몰기한을 설정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원칙대로 2024년말 일몰기한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57)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이 일몰되면 해당 금액(담배소비세액 × 43.99%)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정부는 관계 부처간 이견⁵⁸⁾을 절충하여 해당 일몰기한을 2026년말까지 2년 연장⁵⁹⁾하는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며,

그 밖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의안번호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도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가 필요하겠음.

문 의 처
02)6788-5333

58)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짐.

59) 이후 2027년 일몰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함.